



## 頒布刊行物에 記載된 發明의 解釋

〈日本最高裁 1980年 7月 4日 判決, 1978年(行츠) 第69號〉

1. 上告人: M會社의 X, X1

2. 被上告人: Y

3. 判決主文

本件上告를 棄却한다.

上告費用은 上告人들의 負擔으로 한다.

4. 事件概要

上告人은 M會社의 X와 X1이며 이들은 自己의 特許發明이 許特法 第29條1項 및 2項에 의해 無效가 되어 이에 대한 審決取消을 上告하였다.

原審은 無效審決을 支持하였으나 被上告人 Y의 無效理由申請證據를 採用한 原審判斷에 顯著한 法解釋의 잘못이 있다하여 上告하였다.

上告理由要旨인즉

(1) 원심은 許特法 第29條1項3號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의 解釋에 있어 同條項의 간행물이라 함은 이미 世上에 알려진 技術에는 許特權을 賦與할 수가 없다는 特許制度의 趣旨에 비추어 公衆에 대한 情報傳達를 目的으로하여 印刷되고 또한 寫眞, 複寫 등의 手段에 의해 複製된 文書, 圖面, 寫眞등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妥當하다.

또 公衆에 대한 情報傳達方法으로는 文書 등을 多量印刷하여 積極的으로 配布하는 방법도 있으나 需要에 따라 注文될때마다 文書등을 사진 또는 複寫機에 의해 복사하여 交付하는 방법도 있다.

어느 방법에 의해서도 公衆에 정보가 전달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나 同條項은 同條 1號 및 2號와의 關係上「公然」의 要件을 必要로 하지 않으며 國內外이므로 公知範圍가 넓은은 同 1~2號에 따라 原理原則인 事實이며 3號는 例外的으로 同號의 要件을 具備만 하면 1호의 경우의 公知公用과 같이 煩雜하여 困難한 認定을 면케한 것이다.

따라서 「간행물」이라 함은 公開의인 出版物을 가리키며 출판이라 함은 發賣頒布하기 위하여 文書, 圖面을 인쇄함을 말하고 손으로 쓴것이나 炭酸紙나 其他의 機械 등으로 복사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간행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반포」라 함은 간행물이 不特定多數人에 반포하기 위하여 출판된 것이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本件은 이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摘示하였다. 그리하여 본건은 特定個人의 要求로 복사된 個人에게만 複寫하여준 複寫物에까지 本條項 3號를 擴大解釋해서는 안된다고 反論하였다.

(2) 그외에도 本件特許發明의 技術面에 대해서도 本件無效理由의 證據와 本件特許發明의 進歩性判斷에도 잘못된 해석이 있다는 X 및 X1의 주장이 있었다.

5. 判決要旨

許特法29條1項3號에서 말하는 반

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公衆에 대하여 반포에 의해 公開하는것을 目的으로 복제된 文書, 도면, 其他 이와 비슷한 情報傳達媒體로서 반포된 것을 指稱하되 여기에서 公衆에 대하여 반포에 의해 공개하는 것을 目的으로 복제한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반드시 公衆의 閱覽을 期待해서 미리 公衆의 要件을 充足할 수 있다고 보일 정도의 部數가 原本에서 복제되어 널리 公衆에 提供될 수 있는 것에 局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그 原本自體가 공개되어 公衆에 自由스럽게 閱覽되고 또 그 복사물이 公衆으로 부터의 要件에 即應하여 지체없이 交付되는 態勢가 整備되어 있으면 公衆으로 부터의 要件을 기다려 그때마다 原本을 복사하여 교부한다 해도 無妨하다고 해석함이 妥當하다.

本件의 第1 引用例은 西獨實用新案登錄 第1859490號 明細書의 복사물으로써 同國에서 著名한 카메라 내지 필름메이커인 애그라게펠트會社, 코닥會社, 에른스트라이츠會社, 라이일케會社 등이 本件特許出願前인 1962年 10月 15日부터 同年 11月 14日까지의 사이에 잇달아 同國 特許廳에서 또는 私의서비스會社인 獨逸特許서비스會社로 하여금 배포받은 것과 體制內容이 完全 同一하므로 本件複寫物과 같이 本件 明細書의 복사물로서 本件特許出願前 同國

特許廳 또는 그 獨逸特許서비스會社가 배포한 것으로 推認할수가 있으므로 본건 명세서는 본건 특허출원전의 前同年 10月 4日에 登錄된 前記實用新案의 出願書類로서 同日以後 同國特許廳에서 公중의 열람에 부쳐졌으며 더욱이 본건명세서와 같은 登錄實用新案의 出願書類原本複寫物을 바라는 者는 누구나 同國特許廳으로부터 또는 私의서비스會社, 例를들어 前記 獨逸特許서비스會社를 活用하여 通例注文書發信後 約 2週間內에 入手할 수 있었다는 것도 原審에서 確定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복사물 내지 第1引用例는 公중에게 반포로서 公개를 목적으로 한 본건특허명세서의 複製된 문서이며 본건특허출원전에 이미 반포되어 있었다고 할수 있으므로 特許法 29條1項3號에 列擧된 반포간행물에 해당한다고 認定하여 무방한 것이다.

이로써 原判決은 正當하며 원판결의 所論에 違法은 없다. 論旨는

獨自의 見解 내지는 원심의 인정이 相異한 事實인 원판결을 論難함에 지나지 않으며 어느 것이나 採用할 수가 없다.

餘他的 上告理由에 대해서도 소론의 점에 관한 원심의 認定判斷은 原判決擧示의 證據 및 그 設示에 비추어 正當하다고 是認할 수가 있고 그 過程에 소론의 위법은 없으며 또 원판결은 所論引用의 當裁判所判例에 反하는것도 아니므로 上告를 棄却한다.

6. 解 說

본건에서의 爭點은 복사물이 반포된 간행물의에 해당여부이다.

이 점에 대해서 特許法 立法趣旨를 說明하는 條解說에 의하면 「간행물이라함은 인쇄에 의해 發行된 公開의性質의 문서, 도면등을 말하므로 손으로 쓴것이나 炭酸紙로 복사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간행물이 아닌 公제적인 것이므로 印刷物의 內容을 秘密로 하는 것이나 혹은 私文書를 多數人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인쇄한 物件은 여기에서 말하는 간행물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公제한다는 것은 公중에 대하여 간행물을 반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널리 情報傳達 媒體性을 지닌 今日的意味로서 理解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公중에 公제하는 물건 즉 간행물을 인쇄물에 限定하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論理이다.

인쇄물이 아니면 간행물이 아니라고 한 立法趣旨의 解說이 意圖하는 바는 인쇄물이라고 固定할수 있는 물건 즉 客觀的으로 特定할수 있는 물건이라는 의미이며 그 내용은 프린트된 것이면 무방할뿐 印刷技術이나 方法까지 限定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여러 意見가운데 인쇄물이란 위와같이 해석하여 널리 報導傳達媒體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이와같은 의미에서 本判決趣旨도 타당하다는 結論들이다.



**大宇重工業** 서울事務所  
大宇빌딩으로  
大宇重工業株式會社(代表: 尹永錫)는 서울事務所를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 機械工業振興會에서 大宇빌딩 20層으로 移轉했다.

전화: 779-1031~5  
**大宇實業** 브랜드, 디어 미스터 選定  
大宇實業株式會社(代表: 金德中)는 社內職員 800餘名이 參加

한 男性衣類 브랜드 募集에서 디어 미스터를 選定했다.  
디어 미스터 브랜드는 캐주얼, 와이셔츠, 正裝 등 3種類의 男性衣類에만 使用할 豫定이다.